

航空宇宙法學會誌 第25卷 第2號
2010년 12월 30일 발행, pp. 79~112

논문접수일 2010. 12. 7
논문심사일 2010. 12. 17
게재확정일 2010. 12. 23

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 호 원*

목 차

- I. 서 론
- II.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
- III. 북경 협약과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
- IV. 결 론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I. 서 론

1. 배경

최근 글로벌 시대에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기의 대중화 눈부신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동경협약¹⁾이 제정되었고, 비행중인 항공기 납치 범죄를 다루는 헤이그 협약²⁾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³⁾이 1971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항공범죄는 지능화되고 치밀해 지고 거대화되어졌다. 2001년 9.11 무슬림 과격단체의 알카에다의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2006년 8월 액체폭탄을 이용한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 미수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2010년 11월에는 우편물 폭발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액체 폭탄이 발견 된 후 공항에 이를 탐지가능한 적절한 장비가 없어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⁴⁾ 또한 종이폭탄이라는 신종폭발물의 발견은 다시 한 번 테러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규율할 만한 국제협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1971년에 만들어진

-
- 1)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함.
 - 2)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함.
 - 3)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함.
 -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협약국에 대해 액체, 젤루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미국(06. 8. 11 시행) 및 EU 소속 국가(06. 11. 6 시행) 운항편에 대하여만 실시하던 것을 국제선 모든 편(환승편 포함)으로 확대 적용함.

몬트리올 협약은 최근 발생하는 신종테러를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ICAO에서는 이같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항공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급기야 2002년 9·11테러이후 ICAO 이사회에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⁵⁾할 것을 요구하는 ICAO 총회 결의안(A33-1) 채택되었고, 2009년에는 1970년 헤이그 협약(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몬트리올 협약(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개정안 작성을 위한 제34차 법률위원회 개최되었다.

2. 2010 북경협약 제정

그 후속 절차로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ICAO 북경외교회의(2010. 8. 30 ~ 9. 10)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ICAO회원국 80개국 약 4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이 항공보안외교컨퍼런스 (Diplomatic Conference on Aviation Security)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항공보안 강화 문제였다. 1971년 몬트리올 협약과 이를 개정한 1988년 Airports Protocol⁶⁾을 수정하고 보완해 2010 북경협약을 탄생시켰다. 즉 21세기 글로벌 항공산업이 직면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및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보조

5) 많은 나라가 항공기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74. 12. 26. 법률 제2742호로 항공기 운항 안전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동 국내법은 제3조에서 1963년 동경 협약 상의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하고 제 8~10조에서는 1970년 헤이그 협상상 납치도 처벌 범죄에 추가하여 질서가 없으며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상의 범죄는 아예 누락시킴으로 맞지않은 입법이 되었음. 동 법은 02. 8. 26. 전면 개정되어 법률 제6734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후 수차 개정하여 09. 6. 9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이를 다시 개정이 될 것이며 항공레저 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량 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업자의 허가를 정기와 비정기로 구분하여 오던 것을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등이 반영되었음.

6) 1988년 2월 24일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의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 방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동 의정서는 10개국이 비준한 89. 8. 6. 발효함(의정서 제6조)

의정서'(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등 2건의 Aviation Focus 항공보안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민항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도시명을 딴 국제공약으로 2010년 '북경협약'과 2010년 '북경의정서'로 명명 되었다. 이번 2010년 '북경협약'과 2010년 '북경의정서'는 공통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위협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으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가할 경우, 또한 정황이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준비에 참여한 사람은 공모한 것이 밝혀진 경우, 설사 범죄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된다는 새로운 조약 내용이 늘어났다.

북경협약은 채택된 즉시 18개국 국가대표가 서명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치는 높았으며 북경 외교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역시 동협약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동 협약 서명하였다. 우리정부는 추후 국내 절차를 걸쳐 비준하고자 하며, 동 협약은 22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일에 발효하게 된다.

II.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

1. 북경협약의 특징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

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⁷⁾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에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사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 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2. 공범 개념의 확대

이전에는 테러활동의 배후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9·11테러사건에서 비행기 납치범들은 이미 사망했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기획자와 조직자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의 국제조약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북경협약’에서 ICAO는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지휘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으로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참여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범죄자의 도피 조사, 기소 및 처벌까지 돕는 사람들까지도 범죄로 본다고 하였다. 북경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범죄행위의 배후 조직자 및 지도자도 범죄자로 규정되어 민간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범죄활동 척결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민항영역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이다. 민간 항공영역에서 범죄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범죄 위협만을 했다 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그 위험성은 심각한 파괴를 가

7) 1971년 적십자국제위원회가 소집한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을 위한 정부전문가회의’에서 사용된 것으로 좁은 뜻으로는 교전법규 중 특히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네바 협정), 넓은 뜻으로는 개인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국제법규범임.

저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처벌에 대하여 새롭게 보완된 조약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적결 대상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범죄준비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이는 민항업계의 안전, 질서,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3.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 추가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에서는 특히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목표에 대해 공격 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 행위로 따로 열거하였다. 이는 항공기 납치범 또는 혐의자는 항공기를 공격 무기로 이용하여 지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등 대규모 사상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일반 여객납치에 비해 매우 심각하기에 2010년 ‘북경조약’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비행 중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사망, 심각한 상해 또는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이 사람을 범죄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추가한 것은 국제적으로 항공기는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의 주요목표물이기에 이런 행위를 새로운 범죄 종류로 추가하여 테러활동조직과 테러리스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이 외에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핵무기 적결을 강화하기 위해 북경협약에서는 생물, 화학, 핵물질을 사용하여 민간 항공에 공격을 가하는 것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생물, 화학, 핵물질을 운반하는 데 대한 조약을 신설했다. 이 두 조약은 위의 무기를 이용해 항공기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기가 테러리스트들 수중에 들어가는 것

8) 2001. 9.11 Al-Qaeda 테러단체 소속 19명의 테러리스트가 미국 보스턴, 니와크, 워싱턴DC를 출발하여 아메리칸 에어라인 2대의 항공기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대의 항공기에 분산 탑승하여 항공기를 납치한 가운데 세계무역센터 TKdend이 건물에 각기 충돌시켜 동 건물과 인접건물을 붕괴 내지 폐허화, 나머지 한 대는 미 국방부 건물에 충돌, 나머지 한 대는 승무원과 탑승객이 테러리스트와 사투를 벌이면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Shanksville에 추락함으로 약 2,974명의 민간인 희생과 피해액은 380억불 이상이었음.

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이다.

4. 관할권 명확화⁹⁾ 및 정치범 부정

무국적자가 당사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당사국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주의나 보호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국내법을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면 관할권 행사가 좀 더 명료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민항기 납치 및 기타 민항운송과괴행위가 정치행위에 속하는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 왔다. 과거 국제 민간 항공조약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2010년 북경협약에서는 이런 성격의 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범죄로 보지 않을 것이며, 각 국도 정치범죄를 범죄자 인도 및 국제사법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객기 납치 등을 꾀한 테러리스트들이 정치범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III. 북경 협약과 몬트리올협약과의 비교

1. 새로운 범죄 신설: 북경 협약 Article 1, 1항

새로운 북경협약에서는 기존의 몬트리올 협약 Article 1에서 규정한 범죄에 추가하여 새로운 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우선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환경 또는 재산의 심한 피해를 주는 BCN무기, 폭발성, 방사능, 기타 비슷한 물질을 운항 중인 항공기로부터 투하한 경우와 이들 무기로 항공기

9) 영미법 국가는 영토관할권만을 주장 하여 항공기를 영토로 간주하지 않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자국 국민이 범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 즉,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약20여 개국에 불과하였고, 나라에 따라 국내법과 쌍무조약에 따라 범인 인도를 하는 나라(ex. 프랑스, 이태리등)와 그렇지 않은 나라(ex. 영국 등)로 나누어지는 등 항공기 범죄에 있어 관할권관련 논란이 존재하였음.

에 대하여든 항공기내에서 사용을 방치한 경우를 범죄로 하고 있다¹⁰⁾.

또한 인류를 위협할 목적의 인명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피해를 야기할 만한 폭발성 있거나 또는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다음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BCN무기와 핵분열 재료 또는 장비와 관련되어 핵폭발 활동을 의도하거나 국제 원자력협회가 정하는 보호 장치 협약에 의하지 아니한 핵관련 활동 및 합법적인 허가 없이 BCN무기 활용 무기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는 것을 첨부하여¹¹⁾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0) Article 1

1. Any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at person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 (g) releases or discharges from an aircraft in service any BCN weapon or explosive, radioactive, or similar substances in a manner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death, serious bodily injury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the environment; or
 - (h) uses against or on board an aircraft in service any BCN weapon or explosive, radioactive, or similar substances in a manner that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death, serious bodily injury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the environment; or
- 11) (i) transports, causes to be transported, or facilitates the transport of, on board an aircraft:
 - (1) any explosive or radioactive material, knowing that it is intended to be used to cause, or in a threat to cause, with or without a condition, as is provided for under national law, death or serious injury or damage for the purpose of intimidating a population, or compelling a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to abstain from doing any act; or
 - (2) any BCN weapon, knowing it to be a BCN weapon as defined in Article 2; or
 - (3) any source material,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knowing that it is intended to be used in a nuclear explosive activity or in any other nuclear activity not under safeguards pursuant to a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r
 - (4) any equipment, materials or software or related technology tha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design, manufacture or delivery of a BCN weapon without lawful authorization and with the intention that it will be used for such purpose;

<표 1> 몬트리올조약과 북경협약 제 1, 2조 비교표)

몬트리올 협약			북경협약			
제 1조	1항	abcde	제 1조	1항	abcde	동일
					fghi	신설
	2항	a		4항 a		동일
		b		4항 b		수정
				2항	신설	
				3항	신설	
				5항	신설	
2조	ab		2조	ab		동일
				cdefghij		신설

2. Article 1 후반부 (2~5항)

(1) 4항 변경

몬트리올 협약 제 1조 2항에서는 제1조의 1항에서 정의한 범죄에 추가적인 단서를¹²⁾ 달고 있다. 즉 (a) 본 조 1항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를 시도한 경우 또는 (b) 그러한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하려고 시도하는 자의 공범자인 경우에도 또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¹³⁾ 라고 규정을 해 범죄를 시도하거나 공범자인 경우에도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0 북경협약 제 1조에서는 기존의 2항은 4항으로 옮기며 그 내용을 추가, 보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범자의 내용을 확대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단순히 “범죄를 시도하려는 자의 공범자” 라고만 규율

12) 2. Any person also commits an offence if he 라는 문구에서 also 라는 단어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13) (a) attempts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b) is an accomplice of a person who commits or attempts to commit any such offence.

하였지만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 된 표현을 적용함으로써 공범자의 적용을 강화하였다. 즉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단순히 공범자(accomplice)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을 세분화 하여 정범에 참여하거나(participate)¹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organize)¹⁵⁾ 지휘(direct)하는 개념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이들 범죄인을 숨겨주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¹⁶⁾. 즉, 어떤 자가 제 1조 1, 2, 3, 4(a), 4(b) 혹은 4(c)의 행위의 범죄를 저지른 자 혹은 사법당국에 의해 수배가 되거나 범죄자라고 판결이 받은 자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조사, 기소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운 자 역시 범죄로 규정하였다.

이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신종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를 규율하고, 범죄 가담자의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자 혹은 공범을 규율하기 위한 좀 더 넓은 제시안을 내놓았다.

(2) Article 1, 2항 신설

북경협약 제 1조 2항에는 항공기를 통해 특수한 물체나 물질을 이용해 범해지는 범죄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신종 범죄로 떠오른 액체를 이용한 항공기 테러 혹은 종이폭탄 등을 이용한 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떠한 장치, 물질 혹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¹⁷⁾.

14) (c) participates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set forth in paragraph 1, 2, 3 or 4(a) of this Article; or

15) 4. Any person also commits an offence if that person:

(a) attempts to commit any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or

(b) organizes or directs others to commit an offence set forth in paragraph 1, 2, 3 or 4(a) of this Article; or

16) (d)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assists another person to evad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unishment, knowing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an act that constitutes an offence set forth in paragraph 1, 2, 3, 4(a), 4(b) or 4(c) of this Article, or that the person is wanted for criminal prosecution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or such an offence or has been sentenced for such an offence.

17) Any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at person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using any

이전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운항중인 항공기(Aircraft in service)에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번 북경조약에서는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까지¹⁸⁾ 다음으로써 항공기내 뿐만이 아닌 테러의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는 공항에 적용될 수 있게 하여, 공항을 이용 중인 승객 혹은 대기 중인 항공기에까지 테러에 대한 규정의 확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북경조약 제 1조 2항 (a),(b)에서 국제민간항공에 속한 공항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¹⁹⁾ 또는 국제민간항공에 속한 공항의 시설 혹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 비행기 혹은 공항의 운영에 방해를 초래하는 파괴 혹은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²⁰⁾포함했다.

(3) Article 1, 3항 신설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이러한 위협을 겪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협이 확실하다고 여기지는 징조를 나타내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²¹⁾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의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정황이 있다면 범죄가 범해 진 것으로 추정해 협약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던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4) Article 1, 5항 신설

북경협약에서는 위에 언급 되어진 내용 이외의 또 다른 항공기를 이용한 신종 범죄의 내용 혹은 각 국가마다 해석, 적용의 상이할 수 있음을 의식해 범죄라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각 협약 당사국은 제 1조 1, 2항 혹은 3항의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동의하거나 이 동의한 범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공범자 중 한 명에 의하여 착수된 행위에 동

device, substance or weapon:

18) if such an act endangers or is likely to endanger safety at that airport

19) (a) performs an act of violence against a person at an airport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which causes or is likely to cause serious injury or death

20) (b) destroys or seriously damages the facilities of an airport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 aircraft not in service located thereon or disrupts the services of the airport,

21) (b) unlawfully and intentionally causes any person to receive such a threat, under circumstances which indicate that the threat is credible.

참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범하거나 시도한 경우와 또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한 그룹에 의해 일반적인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도 범죄로 처벌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했다²²⁾.

3. Article 2 전반부

(1) Article 2, (a),(b): 동일

몬트리올 협약 제 2조 (a), (b)와 북경협약 제 2조 (a), (b)는 동일하다. 즉, (a) 항공기는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으로부터 하기를 위하여 그러한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의 어떠한 시간에도 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강제착륙의 경우, 비행은 관계당국이 항공기와 기상의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b) 항공기는 일정 비행을 위하여 지상원 혹은 승무원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 전 준비가 시작된 때부터 착륙 후 24시간까지 운항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운항의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비행 중에 있는 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

(2) Article 2, (c)~(g) 신설

그러나 북경협약 제2조는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 되었다. 우선 (c)에서 “항공시설”은 항공기의 항법을 위해 필요한 신호, 자료, 정보 또는 체계를 포함한다고 하고 계속하여 유독성 화학물질(d), 방사능 물질(e), 핵물질(f) 그리고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다른 방사능 폭탄 등을 포괄

22) 5. Each State Party shall also establish as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whether or not any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paragraph 1, 2 or 3 of this Article is actually committed or attempted,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 (a) agreeing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 offence set forth in paragraph 1, 2 or 3 of this Article and, where required by national law, involving an act undertaken by one of the participants in furtherance of the agreement; or
- (b) contributing in any other way to the commission of one or more offences set forth in paragraph 1, 2 or 3 of this Article by a group of persons acting with a common purpose, and such contribution shall either:

한 BCN 무기(h)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 “유독성 화학물질”이란 생명과정에 대한 그것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인간이나 동물에게 죽음, 일시적 무능력 상태, 영구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말한 모든 화학물질들을 출처 또는 제작 방법에 상관없이, 그리고 군수 또는 다른 곳의 시설에서 만들어졌는가에 상관없이 포함한다.

(e) “방사능 물질”이란 핵 물질과 자발적인 붕괴를 하는 핵종을 포함하며 (하나의 방사물 또는 알파-, 베타-, 중성자 입자와 감마광선과 같은 이온화하는 방사물의 추가적인 형태) 그리고 방사능 또는 분열적인 속성 때문에 재산이나 환경에 죽음,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 또는 상당한 손상을 유발하는 그 밖의 방사성의 물질을 의미한다²³⁾. 방사능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로우며, 이것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와 엄중한 관리, 완벽한 시설이 요구된다²⁴⁾.

23)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원자핵을 방사성 핵종(核種)이라 하고,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연계에는 우라늄·라듐을 비롯하여 원자번호가 비교적 큰 약 40종에 이르는 원소의 원자핵이 이에 속하며, 원자핵 반응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방사능을 띠게 한 것에는 원자번호 1인 수소에서 104번 원소인 쿠르차트륨(kurchatvium)에 이르는 약 1,000종의 방사성 핵종이 존재한다.

24)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 장애는 인체가 외부로부터 방사선을 쬐는 외부조사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입·코·상처 등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한 내부조사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장애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쬐는 방사선량이 많을수록 높지만, 유전효과나 백혈병의 발생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량이 아무리 작아도 발생률이 0이 되지 않는다고 최소한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어떤 세기(허용량) 이하이면 절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아무리 작은 선량(線量)이라도 그것을 쬐는 사람의 수효가 많으면 많은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 함신, 핵폭발 등에 따르는 주민환경의 방사능 오염은 경계해야 한다.

1945~1963년 미국·소련 등은 대기권 내나 고공에서 총계 600Mt(이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만 개에 해당한다)의 핵폭발을 실험함으로써 방사성 낙진(fall-out: 죽음의 재)을 전세계에 뿌려서 대기 속의 방사성 탄소 14C를 거의 배가시켰다. 최근까지 지표면에 강하한 양은 가장 해로운 90Sr만도 10 MCi 이상이며, 유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137Cs이 15MCi 전후이다. R.포링에 의하면, 이로 말미암아 백혈병·암환자가 수십만 명 증가하고, 태어날 기형아가 160만 명, 사산·조산아가 1,600만 명 전후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f) “핵 물질”²⁵⁾은 플루토늄-238중에서 농축도가 80퍼센트가 넘는 동위원소; 동위원소 235 또는 233중에서 농축된 우라늄; 광석 또는 광석 잔여물의 형태로 된 것 외에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우라늄; 또는 전에 말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원소; 를 제외한 플루토늄²⁶⁾을 의미한다.

원자력법	제2조 (정의)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원자력시 설등의방 사호및방사 능방재대 책법	제2조 (정의) ① 1. “핵물질”이라 함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토륨·플루토늄·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시 설등의방 사호및방 사능방재대 책법시 행령	제3조 (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26) Plutonium(Pu)

주기율표 3족 중 악티늄족에 속하는 방사성 원소. 특정 형태의 원자로의 연료와 핵무기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우라늄 원소이다. 플루토늄은 알파 붕괴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따뜻하며, 공기 중에서 노란색으로 변색되는 은색의 금속이다. 이 원소는 1940년 글렌 T. 시보그, 조지프 W. 케네디, 아서 C. 말이 동위원소인 플루토늄-238(238Pu)로 처음 검출했는데,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있는 60in(인치) 사이클로트론에서 우라늄-238(238U)을 중수소로 포격시켜 만들었다. 그 후 계속해서 플루토늄은 우라늄 광석에서 소량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플루토늄의 동위원소는 방사성을 띤다. 가장 중요한 동위원소는 239-Pu로 핵분열을 하며, 비교적 반감기(2만 4,360년)가 길고, 많이 존재하나 분열하지 않는 238U을 증식소에서 중성자를 조사해 많은 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 300g 이상의 양을 다룰 때는 임계질량(합쳐졌을 때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양)을 고려해야 한다. 239-Pu의 임계질량은 235-U의 약 1/3이다. 플루토늄 및 원자번호가 이보다 더 큰 원소는 알파 방출 속도가 매우 크고, 골수에 흡수되기 때문에 방사성 독극물이다. 성인이 뚜렷한 상해를 입지 않고 장기간 지닐 수 있는 239-Pu의 최대량은 0.13μg이다. 반감기가 더 긴 동위원소인 242-Pu와 244-Pu는 화학·금속학 연구에 유용하다. 238-Pu(반감기 86년)은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이용하여 작고 가볍지만 반감기가 긴 열전자 장치와 열이온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플루토늄은 결정구조와 밀도가 서로 다른 6개의 동소체가 존재한다. 알파 형태는 실온에서 존재하며, 모든 금속 원소 중에서 전기저항성이 가장 크다(145μ Ω·cm). 이것은

(g) “동위원소 235 또는 233중에서 농축된 우라늄²⁷⁾”은 동위원소 235 또는 동위원소 233 또는 동위원소 238에 대한 이 동위원소들의 합의 풍부함 비율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238에 대한 동위원소 235의 비율보다 큰 범위의 분량에서 동위원소 235와 233 모두를 의미한다.

(3) Article 2 (h)~(j)

(h) “BCN 무기”라 함은 크게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와 다른 방사능 폭탄을 의미한다. 먼저 생물학 무기는 출처 또는 생산방법, 생산 형태와 생산량에 상관없이 병의 예방, 보호 또는 그 밖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정당성이 없는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생물학적 물질 및 독소와 적대적

화학적 반응성이 있고 산에 녹으며, 수용액에서 독특한 색을 지닌 이온으로서 4개의 산화수가 존재할 수 있다. Pu³⁺는 청자주색, Pu⁴⁺는 노란색을 띤 갈색, PuO₂⁺는 분홍색(?), PuO₂²⁺는 분홍색을 띤 주황색이다. 매우 많은 플루토늄 화합물은 이산화플루토늄(PuO₂)을 출발 물질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합성 원소가 순수한 형태로 무개를 쥔 수 있는 양만큼 분리된 합성 원소의 최초의 화합물이다(1942).

27) 우라늄

동위원소: 천연우라늄은 질량수 234(존재 백분율 0.0058 %, 반감기 24만 8000년), 235(존재백분율 0.715 %, 반감기 7억 1300만 년), 238(존재백분율 99.2 %, 반감기 45억 1000만년) 등 3종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지며, 그 밖에 인공적으로 만든 동위원소를 포함하면 질량수 227로부터 240까지 14종이 존재한다. 우라늄 235는 악티늄족 계열 최초의 핵종으로 악티노우라늄(AcU)이라고도 하며, 열중성자(熱中性子)·고속중성자·양성자·i입자·중양성자(重陽性子)·i선 등의 충격에 의해서 핵분열하는데, 열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에서는 약 200 MeV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평균 2.5개의 중성자도 방출한다. 따라서 방출된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235 원자를 분열시키도록 조건을 주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순수한 우라늄 235에서는 1 g당 매초 약 0.0003개의 원자가 자발핵분열(自發核分裂)을 일으키므로 일정량 이상 모이면 연쇄반응에 의해서 핵폭발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원자폭탄이었다. 우라늄 238은 우라늄계열의 최초의 핵종으로 우라늄I(UI)라고도 하며 중성자를 많이 흡수하므로 연쇄반응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우라늄 239로 되어 넵투늄 239를 거쳐 플루토늄 239로 변한다. 이 플루토늄 239는 중요한 핵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천연 우라늄 중 235와 238을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원자폭탄제조계획에 의해서 모든 방법들이 검토되었다. 결국 플루오르화물 UF₆를 이용하여 그 기체에서 확산속도의 차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 채용되었다. 즉, 기체로 변화시킨 경우의 235UF₆와 238UF₆에서는 분자 1개의 무게가 1 % 정도 다르므로 많은 구멍을 뚫은 벽에 혼합기체를 흐르게 하면 가벼운 것이 다소 빨리 흐르게 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시킴으로써 농축시킬 수 있다. 또 토륨 232를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 235의 열중성자류에 접촉시키면 토륨 232로부터 프로트악티늄 233을 거쳐 우라늄 233이 얻어지는데 이것은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와 같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므로 원자로 연료로 중요하다.

인 목적 또는 무력충돌에 생물학적 물질 또는 독소를 사용하기 위한 무기, 장비 또는 계획적인 전달수단²⁸⁾을 말한다.

화학무기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전구물(precursor)을 말한다. 그러나 이에겐 공업용, 농업용, 연구용, 제약용 혹은 다른 평화적 목적에 기여하거나 유해화학물질과 화학무기에 대한 보호와 관련되어있는 방어목적에 부합하거나 군사적 목적 및 국내폭동 진압목적에 포함된 범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사망과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제작된 군수품과 폭탄 및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장비도 역시 화학무기의 범주에 포함한다²⁹⁾.

또한 전구물이란 개념을 정립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 생성단계에 참여하는 화학적 반응 물질까지도 위험 물질로 취급하고 있다³⁰⁾. 9.11 이후 현재

28) (h) "BCN weapon" means:

(a) "biological weapons", which are:

- (i) microbial or other biological agents, or toxins whatever their origin or method of production, of types and in quantities that have no justification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or
- (ii)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designed to use such agents or toxins for hostile purposes or in armed conflict.

29) (b) "chemical weapons", which are, together or separately:

- (i) toxic chemicals and their precursors, except where intended for:
 - (A) industrial, agricultural, research, medical, pharmaceutical or other peaceful purposes; or
 - (B) protective purposes, namely those purpose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against toxic chemicals and to protection against chemical weapons; or
 - (C) military purposes not connected with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nd not dependent on the use of the toxic properties of chemicals as a method of warfare; or
 - (D) law enforcement including domestic riot control purposes, as long as the types and quantities are consistent with such purposes;
- (ii)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cally designed to cause death or other harm through the toxic properties of those toxic chemicals specified in subparagraph (i), which would be released as a result of the employment of such munitions and devices;
- (iii) any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for use 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ment of munitions and devices specified in subparagraph (b)(ii).

30) (i) "Precursor" means any chemical reactant which takes part at any stage in the production by whatever method of a toxic chemical. This includes any key component of a binary or multicomponent chemical system;

국제민항의 경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비행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테러 활동의 인물이나 배후를 척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자의 자금, 무기 또는 도피 조사나 그들의 테러 이후 사후 처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제항공조약에 대한 규정 강화로 이어져 북경협약은 기존 국제항공조약의 척결 대상보다 광범위하게 잡아서 기존의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범죄자인 테러범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단체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즉, 테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생물무기, 화학무기 및 핵무기 척결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생물, 화학, 핵물질의 기본 개념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금지 조약을 인용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민간항공에 공격을 가하는 것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생물, 화학, 핵물질을 운반하는 데 대한 조약을 신설했다. 이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조약들은 이들 무기를 이용해 항공기를 공격하는 행위를 단속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 그들이 제 2의 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조약들은 기존의 국제항공조약에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북경협약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연관된 다른 조약에서 찾아야 된다. 그 근원들은 화학무기금지조약³¹⁾, 생물무기금지조약³²⁾ 및 핵무기확산금지조

31)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영향을 준 금지규정:

제 1 조 일반적 의무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다음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 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 비축, 보유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화학무기의 인도 나. 화학무기의 사용 다. 화학무기의 사용을 위한 모든 군사적 준비행위 라. 여하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권유하는 행위

약33)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금지 조약들은 각각의 무기를 사용금지, 확산 금지 및 부속서나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각 무기들의 정의 및 종류를 분류

제 2 조 정의 및 기준

이 협약의 목적상,

1. “화학무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전체를 의미한다.
 -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단, 이 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형태와 수량이 이러한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그 사용결과로 방출되는 가호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을 이용,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를 일으키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호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모든 장비
 2. “독성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명과정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근원 또는 생산방법과 화학물질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탄약내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모든 화학물질이 포 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독성화학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3. “원료물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방법어하에 관계없이 독성화학물질의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모든 화학반응물. 여기에는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모든 핵심성분이 포함된다(이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검증조치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원료물질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에 포함된 목록에 열거되어 있다).
 4. “이성분 또는 다성분 화학체계의 핵심성분” (이하 “핵심성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최종산물의 독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성분 또는 다성분 체계에서 다른 화학 물질과 신속하게 반응하는 원료물질
- 22) 생물무기금지조약에서 영향을 준 금지규정:
협약의 당사국은 제1조 (1) 및 (2)에 규정하는 물질을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제1조),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제2조),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 등(제3조)을 협약하고, 제1조의 규정의 물질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존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33) 핵확산금지조약에 영향을 준 금지규정:

제 1 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어떠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어떠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북경협약에 나와 있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조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북경협약에 영향을 주는 이들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금지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타국의 양도 금지 ② 제3자에게 제공 및 활동 지원 금지 ③ 군사목적 이외의 사용 허가 허용범위 ④ 각 무기들과 그 무기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정의와 종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곧 북경조약의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조약들의 대부분은 각 금지조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무기에 대한 개별적인 금지조약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경협약에 나와 있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조약과 각각 무기금지조약 에 나와 있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금지 조약들은 커다란 큰 차이점이 있는데, 무기금지조약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약이므로 그 제약대상의 주체는 국가 대 국가임에 반면 북경협약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약이지만 그 제약대상의 주체가 국가뿐 만 아니라 개인 또한 주체로 삼는다는 것이 무기금지조약과 다른 점이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인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를 볼 수 있다.

4. 북경협약의 관할권: Article 6~8

관할권문제에 있어서 북경협약이 몬트리올 협약보다 발전된 내용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 문제가 약간 추가 되었을 뿐이다.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북경협약의 article6과 article7이다.

(1) 개요

항공운항의 특수성 때문에 항공기 테러, 공항 테러, 항공기내 여러 범죄 행위 등 항공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을 적용할지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1963년 동경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범죄의 규정, 범인의 인도, 항공기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체약국에 범인 처벌을 부과한 내용이 주를 이룬 이 조약은 하이재킹 문제 등 여러 항공관련 범죄를 모두 규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³⁴⁾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도 협력을 통하여 이런 항공범죄들에 대한 관할권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63년 채택된 동경협약을 시작으로 1971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거쳐 현재는 북경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경조약 이전에 채택된 조약(몬트리올 협약)에서의 관할권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으로 북경협약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몬트리올 협약에서의 관할권 문제

1970년 헤이그 조약으로 인하여 항공기 납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국한되어 조약이 작성되어 있다. 항공기의 운항은 비행 중(in flight)과 운항중(in service)로 나뉘는데 운항중은 비행 중을 포함한 항공기 서비스의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운항중이긴 하지만 비행중이 아닌 경우에 일어난 범죄에 관하여는 헤이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제정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의 관할권은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다.

1. 각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범죄가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범하여진 경우
 - (나) 범죄가 그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또는 기상에서 범하여진 경우
 - (다) 범죄가 기상에서 범하여지고 있는 항공기가 아직 기상에 있는 범죄 혐의자와 함께 그 영토 내에 착륙한 경우
 - (라) 범죄가 주된 사업장소 또는 그러한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 주소를 그 국가 내에 가진 임차인에게 승무원 없이 임대된 항공기에 대하여 또는 기상에서 범하여진 경우

34) 박원화, 항공법 제3판, p.269.

5조의 1은 이전의 협약과 다를 것이 없는 조항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기존의 관할권 적용범위를 고수하면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단 5조1항의 (다)부분은 범죄혐의자가 하이재킹에 성공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상에(in flight) 있어야 함에 반해서 몬트리올 협약상의 범죄자는 동 협약 제1조 1항³⁵⁾(가)의 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항공기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³⁶⁾이다. 이처럼 이전의 협약에서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몬트리올 협약이 보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몬트리올 협약은 이전 협약과 같이 무국적자의 문제³⁷⁾, 관할권의 경합시 우선권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3) 북경협약에서의 관할권

몬트리올 조약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무국적자의 문제와 다른 조약에서의 관할권문제의 충돌 시 어떤 조약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북경협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와 개정이 이루어져 관할권문제가 한층 더 명료하게 되었다. 먼저 무국적자의 문제를 살펴보면 몬트리올 협정에 의한다면 무국적자의 범죄행위는 어떠한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국내법에 의하여 세계주의나 보호주의 이론을 적

35) 1. 여하한 자도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가) 비행중인 항공기에 탑승한자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파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비행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운항중인 항공기상에 그 항공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장치나 물질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되도록 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기설을 파괴 혹은 손상하거나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고 그러한 행위가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마) 그가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하여, 그에 의하여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

36) 김한택,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항공우주법학회지 2009. 6. p.74.)

37) 인질협약 5조1항 (나)에서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그가 인질역류범죄를 행하였거나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었긴 하지만 이는 협약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북경협약 8조 2항의 (b)에서 이를 규정하여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즉,

2.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b) 거주지가 없는 무국적자가 당사국에서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³⁸⁾.

이에 따라 무국적자가 당사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당사국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세계주의나 보호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국내법을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면 관할권 행사가 좀 더 명료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다른 조약과의 관할권경합의 경우에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다. 6조와 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 6조 1. 제 6조 1. 이 협약은 특히 UN헌장 하의 국제민간항공과 국제인권법의 원리와 목적에 따른 국제법하의 각 국의 주권 및 개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제분쟁 중의 군사활동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군사훈련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약의 전 2항 규정은 합법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용납 또는 다른 법의 적용을 금지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³⁹⁾.

38) 2. Each State Party may als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any such offence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against a national of that State;

(b)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by a stateless person whose habitual residence is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39) Article 6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other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The activities of armed forces during an armed conflict, as those terms are understoo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re governed by that law ar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nd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military forces of a State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ial duties, inasmuch as they are governed by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not governed by this Convention.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interpreted as condoning

제7조 이 협약은 1968년 1월 모스크바 런던 워싱턴 핵무기 비확산 조약, 1972년 10월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 생체 무기 또는 독성 무기의 개발금지 및 보유 금지 조약, 1993년 1월 13일 파리 화학무기 개발 금지 및 보유 금지 조약의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⁴⁰⁾.

다른 조약과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권 경합문제가 조금 더 명확히 함으로 북경협약은 몬트리올 조약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국제항공테러협약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생각하던 관할권의 경합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역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A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내에서 무국적자인 갑이 B국에서 C국민에 대한 테러행위를 하였을 때 어느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 문제이다. 이 경우 조약에서 규정된 것은 없고 각 국의 조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물론 북경협약에서 11조⁴¹⁾에 인권에 대한 조약을 신설하면서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이다. 또한 각 국의 국내법 체계가 상이하고 정치적으로 법이 적용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하여는 관할권의 경합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동감하나 앞으로 국제항공테러협약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or making lawful otherwise unlawful acts, or precluding prosecution under other laws.

40) Article 7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igned at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on 1 July 1968,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signed at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on 10 April 1972, or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signed at Paris on 13 January 1993, of States Parties to such treaties.

- 41) 구금되어진 자 또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본 협약에 의해서 절차가 진해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그 자가 현존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적절한 보장 및 국제 인권법등 국제법의 해당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대우가 보장된다.

5. Article 9~11

(1) Article 9~10

제9조는 제1항에서 ‘사정이 그와 같이 허용한다고 인정된 경우, 범인 및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를 구금하거나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구금 및 기타 조치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나, 형사 또는 인도절차를 취함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이하 제2, 3, 4항에서 예비조사와 본국대표자와의 연락 및 통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는 ‘항공기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제6조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문으로써 범인 및 범죄혐의자를 그가 현존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구금과 조사 그리고 통고의무의 근거규정이 된다.

제10조도 제9조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제7조,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7조와 동일한 조문으로써 범의자를 최초로 발견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그를 인도하지 않고 본국 스스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Article 11

앞의 두 조문이 몬트리올협약들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함과 달리 제11조는 앞의 ‘항공기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이나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조문으로써 이번 북경협약에서 새로이 추가가 된 것이다. 그 내용은 ‘구금되어진 자 또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본 협약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그 자가 현존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적절한 보장 및 국제 인권법등 국제법의 해당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대우가 보장된다’ 는 것인데, 이는 항공범죄가 아직 법적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 등에서 행하여 졌을 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인의 구금 및 인도절차상 자칫하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범죄인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해 주기 위해 추가된 조문으로써 구조약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인권보호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경협약 제11조에서는 범죄혐의자들이 구금되거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그 자가 현존하는 국가 및 국제법상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공정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범죄가 아직 법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 등에서 행하여 졌을 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인의 구금 및 인도절차상 자칫하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범죄인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해 주기 위해 추가된 조문으로써 구조약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인권보호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⁴²⁾과 여러 국제인권규약⁴³⁾ 및 기구

42) 1945년 창설된 UN은 현장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UN헌장은 국제문제로 인식되던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전환하였으며 UN이 이를 함범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였다.

UN은 1948년12월10일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이 선언이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에 대한 공동된 성취의 기준”임을 천명하였고 동 선언은 회원국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효율적인 인정과 준수를 증진하고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맹국들이 지켜야할 공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며 법적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 1966년 UN이 세계 최초로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을 작성하는 기초가 된 것이다.

43) 국제인권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는 실시규정이 없는데 비하여, 전자는 실시규정을 두어 비준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각 국가의 비준은 받으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B규약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들을 통하여 각국의 인권보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주요 인권협약들은 보고 서제도, 개인청원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자발적 조사제도 등을 통하여 각국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기관들도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6. Article 12~14

(1) Article 12

북경협약 제 12조는 헤이그 제8조와 몬트리올 1971년 제8조와 비교할 수 있다. 제 1 조에 명시되어있는 범죄는 체약국간에 현존하는 인도 조약상의 인도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범죄를 그들 사이에 체결된 모든 인도 조약에 인도범죄로 포함할 의무를 진다. 헤이그 제8조와 몬트리올 협약(1971) 제 8조는 The Offence라고 규정하는데 비해 북경협약 제12조 제1항은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1이라 규정하고 있다. 북경협약 제 12조 제5항은 헤이그 조약과 몬트리올협약과 달리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북경조약 제 1조 제 5항의 (a),(b)는 공동정범 및 종범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죄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⁴⁴⁾.

(2) Article 13조~14

북경협약 제 13조는 제 12조의 예외규정이고 제 14조는 제 13조를 보충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북경협약에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북경협약 제 13조와 제14조에서 언급한 정치범 취급문제이다. 이 협약은 과거에 민항기 납치 및 기타 민항운송과괴행위가 정치행위에 속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약칭 고문방지협약),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44) 5. The offences set forth in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5 of article 1 shall,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 Parties, be treated as equivalent.

제 1조 제 5항의 (a)와 (b)호에 명시된 범죄는 체약국간 범죄인도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하는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논쟁되었으나 과거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북경조약 제 13조와 제 14조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2010년 북경협약에서는 이런 성격의 범죄에 대하여 정치범죄로 보지 않을 것이며, 각 국도 정치범죄를 범죄자 인도 및 국제사법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객기 납치 등을 피한 테러리스트들이 정치범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즉 제 13조에서는 제 1조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인도 또는 상호법적 지원을 위하여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범죄 인도 또는 상호법적 지원에 기반을 둔 범죄에 대한 요청을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⁴⁵⁾.

나아가 제 14조에서는 이 조약은 피요청국들이 제 1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도 요청을 믿거나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기원, 정치적 의견, 성 또는 사람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이유들로 편견을 야기 시키는 그 요청에 따른 이유로 한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들과 관련된 상호법적 지원을 하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범죄인도 의무가 부과된 것처럼 또는 상호법적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45) Article 13

None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1 shall be regarded, for the purposes of extradition or mutual legal assistance, as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s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Accordingly, a request for extradition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based on such an offence may not be refused on the sole ground that it concerns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connected with a political offence or an offence inspired by political motives.

46) Article 1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or to afford mutual legal assistance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for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1 or for mutual legal assistance with respect to such offences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race, religion,

7. Article 23~25

이번 북경협약이 이전에 체결된 동경조약, 헤이그 조약, 몬트리올 협약 등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등에 관한 조약들과의 폐기 조항 및 효력 개시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동경조약, 헤이그조약, 몬트리올 협약을 비교해 보면 체결국이 수탁정부에게 조약의 폐기 통지를 했을 때 그 폐기 통지가 수탁정부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6개월 후 폐기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에 반하여, 북경협약에서는 폐기 통지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후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 시장이 현재 매우 글로벌화 되어 체결국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즉 한 체결국이 조약을 폐기를 통고했을 시 그 효력이 바로 진행된다면 다른 체결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체결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규정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폐기 통고 조항은 향후 체결될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조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결국은 이 조약에 관한 사항을 90일 이내에 그 국가의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즉, 과거와 달리 항공범죄 유형이 기술화,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항공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범죄를 한 시라도 빠른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북경협약은 기존의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어, 중국어의 언어로 정식절차를 받아 비준이 되었다. 이는 기존 협약에 없었던 언어를 추가하여 비준이 된 것으로서 현재 국제민간항공 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아랍권과 중화권 국가들의 체약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여지며, 항공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 세계가 공조해야한다는 것을 내포

nationality,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 or gender,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prejudice to that person's position for any of these reasons.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 론

북경협약은 국제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및 여러 유형의 항공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과거 1971년 9월 23일 발효된 몬트리올 조약과 1988년 2월 24일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의 국제 민간항공의 공항 서비스를 침해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이번 조약에서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 민간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범죄로 규정하였다. 이는 21세기에 항공수요가 급증되었고, 항공산업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항공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자세로 보여진다. 항공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도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협약을 통해 항공범죄에 대한 신규 조항을 채택한 것은 이번 협약의 최대 결실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협약들은 승인을 하면 30일 이후에 그 효력이 개시되는 것에 비해 북경협약은 승인을 하면 그 즉시 이번 협약에 대한 정보를 수명할 수 있고, 효력이 즉시 개시된다.

참고문헌

- 강자영, 안재형, “항공위협 의 역사적 고찰과 항공보안 관리 연구”, 2004.
- 고광남, 소재섭, 「항공보안론」, 2006.
- 김두환, 「국제항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주), 2005.
- 김두환, 「ESSAY FOR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국제항 공법, 우주법 연구논총), 한국학술정보(주), 2008.
- 김맹선, 「항공교통론」 제3판,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10.
- 김종복, 「신국제항공법」, 한국학술정보(주), 2009.
- 김종복, 「항공판례의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8.
- 김주승, 유문기, 정훈, 「항공보안 실무」, 2009.
- 문준조.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원화, 「항공법」, 명지출판사, 2009.
- 이강석,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연구”, 2006.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10.
- 장만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USOAP)가 각국의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2009.
- 조병석, “항공보안검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 홍순길, 「신항공법 정해」, 동명사, 1999.
- 홍순길, 김맹선, 양한모, 「항공법 이론과 실무」,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09.
- 홍순길, 김종복, 신홍균,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2006.
- 황호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0.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한.중 항공보안 및 관제분야 협력 강화 합의」, 2010.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전세계 항공보안평가(USAP)에 우리나라

라 참여」, 2010.

도쿄 조약(Tokyo Convention 1963), 기내범죄방지조약.

몬트리올 조약(Montreal Convention 1971), 항공기 파괴 방지조약.

헤이그 조약(Hague Convention 1970), 항공기 불법납치 방지조약.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지침서」, 2002.

Alexander T. Wells·Clarence C. Rodrigues, Commercial Aviation Safety, Mcgraw-Hill 2004.

Jennifer Zellan, Aviation Security: Current Issues and Development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03.

Jerry A. Eichenberger, General Aviation Law, Mcgraw-Hill 1997

Laurence E. Gesell·Paul Stephen Dempsey, Aviation and the law, Coast Air Publications 2005.

Ruwantissa I.R. Abeyratne, Aviation Security-Legal and Regulatory Aspects, Ashgate 1998.

초 록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에 의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중 항공범죄에 대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 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주제어 : 항공보안, 북경협약, 관할권, 항공범죄, 정치범, 공범, 항공기 테러, 범죄인 인도, 항공기의 무기화, 생·화학 무기 및 핵물질

Abstract

A Study on 2010 Beijing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Aviation

- Compared Beijing Convention(2010) with Montreal Protocol -

Hwang, Ho-Won*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 Professor of air and space law, Korea Aerospace University.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Key Words : Aviation Crime, Aviation Security, Jurisdiction, Political Prisoner, Accomplice, Aviation Terrorism, Criminal Extradition, Aviation of Weaponiz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uclear materials Weapons